

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회 운영규정

제정 2025. 09. 09.

제1조(명칭) 본 협의회는 “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라 한다.)”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확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3조(협의회 및 회의) ①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, 위원 20인 이내로 “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”과 “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센터장”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부회장이 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 포함 6인으로 소집·운영한다.

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,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되, 위원장이 불참할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④ 협의회 회의의 의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협의신청) ①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협의신청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신청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해당하여 협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협의 신청서(별지 1호 서식) 1부
2. 설계도서(배치도, 건축개요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 관련 도서와 필요 시 현황 파악이 가능한 사진 등) 1부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

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 등) ① 협의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의신청이 접수되면 제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신청 내용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신청인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신청 사유 등에 대해 소명하여야 하며, 신청

인이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.

③ 위원장은 협의신청 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협의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“협의결과서”를 신청자와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관할 지역센터에 교부한다.

제6조(수수료 납부) 협의회에 협의신청을 할 경우 건축사회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.

제7조(시행지침) 이 규정의 운영상 수수료 등 별도의 시행지침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 등) 이 시행지침은 2025년 10월 01일 협의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.

협 의 결 과 서(00-0000)

- ☐ 협의일자 : 년 월 일
- ☐ 협의안건 : 대구광역시 구
- ☐ 허가번호 :

■ 협 의 결 과

년 월 일

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협의회 위원장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3호]

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협의회 신청대장

일련 번호	신청 일자	신청인 (설계자)	건축주	대지위치	용도	연면적(m²)	허가번호	감리자	시설주관기관	협의일	협의결과